

한의 관련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제목	내용	시행
교통사고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행시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15세이상)에게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시행한 직접애주구는 유효한 온열자극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1. 요배부, 둔부, 견·고·슬관절의 해당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5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1.을 제외한 부위의 혈위에 소애주를 3장 이상 시행한 경우 인정함 3. 소애주(길이 10mm, 두께 1~2mm)를 이용하여 직접애주구 시행 시 혈자리, 장수, 환자상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2020.12.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0-242호)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온열 검사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한 체온열 검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및 시행횟수 1) 적응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2) 시행횟수: 최초 수상일(사고발생일)로부터 2 ~ 3주 경과 후 상기 적응증 의심시 1회, 확진시 환자 증상변화 확인위해 추가 1회 인정 나. 검사시설 1) 공기흐름이 일정한 공간, 태양광 등 차단 2) 실내 온도 25도 전후(23~27도), 습도 30~75%를 유지 다. 검사방법 1) 검사 전 검사실에서 촬영부위를 가벼운 가운착용 후 체표온도를 실내환경 온도에 적응 시켜야 함 (단, 겨울에는 20분간 실내온도에 적응) 2) 검사 시 촬영부위를 완전 탈의한 상태로 실시하여야 함 라. 체온열 검사 시행시 검사시간, 실내온도, 습도, 검사부위, 검사결과, 환자평가 등 관련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2020.12.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0-242호)

제목	내용	시행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 엑스제) 병용투여시 적용기준	각 약제의 적응증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인정하며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입원기간 중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2020.12.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0-242호)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2021.7.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1-123호)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21-73호(행위), 2021.3.5.시행)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의과</th><th colspan="2">한의과</th></tr><tr><th>분류코드</th><th>분류명칭</th><th>분류코드</th><th>분류명칭</th></tr></thead><tbody><tr><td>MM010</td><td>표층열치료</td><td>40700</td><td>경피경근온열요법</td></tr><tr><td>MM020</td><td>심층열치료</td><td>93023</td><td>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td></tr><tr><td>MM011</td><td>한냉치료</td><td>40702</td><td>경피경근한냉요법</td></tr><tr><td>MM070</td><td>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d><td>93026</td><td>경피전기자극요법</td></tr><tr><td>MM080</td><td>간섭파전류치료</td><td>93027</td><td>경근간섭저주파요법</td></tr><tr><td>MM051</td><td>경추견인</td><td>93028</td><td>경추견인</td></tr><tr><td>MM052</td><td>골반견인</td><td>93029</td><td>골반견인</td></tr></tbody></table>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2021.7.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1-123호)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제목	내용				시행																												
	<table><tr><th colspan="2">의과</th><th colspan="2">한의과</th></tr><tr><th>분류코드</th><th>분류명칭</th><th>분류코드</th><th>분류명칭</th></tr><tr><td>MM090</td><td>마사지</td><td>93032</td><td>근건이완수기요법</td></tr><tr><td>MM101</td><td>단순운동치료</td><td>93030</td><td>도인운동요법</td></tr><tr><td>MM102</td><td>복합운동치료</td><td>93030</td><td>도인운동요법</td></tr><tr><td>MM300</td><td>적외선치료</td><td>40701</td><td>경피적외선조사요법</td></tr><tr><td>51040</td><td>도수치료</td><td>40710</td><td>추나요법(단순)</td></tr></table>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 한방수기요법 변경 시 마다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는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함				2021.12.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1-237호)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료 심사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단순 통원불편·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022.5.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2-103호)																												

제목	내용	시행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가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1) 건강보험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격리실 입원료)적용 가능 환자 (※이 경우,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 2)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환자로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의 24시간 상시 monitoring이 필요한 경우 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 입원진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유 일반병실(남녀 구분하여 각각의 일반병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2022.5.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2-103호)
교통사고환자 입원 시 「하-3」 내지 「하-8」, 「하-10」 수가 산정방법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1), (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입원 시 산정할 수 있는 특수침* (하-3 내지 하-8, 하-10)은 - 단일상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가 동일한 경우)은 특수침 1종을 1일 2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U코드 포함, 진료기록부 참조 사례별 인정)에 특수침 1일 2회 산정 시, 특수침은 최대 2종을 초과할 수 없음. *특수침: 하-3 내지 하-8, 하-10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 내림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 - (1)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 -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	공고(2022.6.22.) 후 즉시 적용 (심평원 공고 제2022-164호)

제목	내용	시행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교통사고와 관련된 질환)에게 수상일로부터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 수상일로부터 12주 초과하여 첩약을 투약하는 경우,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사유(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변증포함)),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함. * 환자상태(증상)는 주관적·객관적 상태를 모두 기록해야 함	2022.11.24. 공고 즉시 적용 (심평원 공고 제2022-288호) ※ 심사지침 개정 ○ 심평원 공고 제2022-164호 ('22.8.1. 진료분부터) : '수상일로부터 12주 이후에' ↓ ○ 심평원 공고 제2022-288호 (공고 즉시 적용) : '수상일로부터 12주 초과하여'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에 따른 복잡추나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록을 확인하여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 확인 후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1.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 포함 2. 환자의 상태(변위, 통증부위·정도·양상)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	2023.1.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2-288호)

제목	내용	시행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시행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로 기재하되, 환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평가한 결과를 기재함	2023.6.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3-82호)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 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1.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한 의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일 적용하되,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함 ※ 주된 치료는 상병관련 주 처치 등을 고려하여 진료내역 기준으로 함 2. 다만, 같은 날 이루어진 진료라도 다음의 경우는 동일 목적의 의과·한 의과 중복진료 범위에서 제외함 - 다 음 - 가. 해당 상병 및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목적의 영상촬영검사 등과 해당 진찰료 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해당 진찰료 다.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의과, 치과, 한 의과 진료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 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	2023.9.1. 진료분부터 (심평원 공고 제2023-172호)